

## Korean Supplementary Text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20 대 국회의 입법과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국문초록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유족 중 상당수는 가해기업과 ‘화해’를 하였다. 사망하거나 중증의 피해자의 경우 화해금액은 교통사고사망시 위자료를 참고해 2-3 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 그리고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조건으로 붙여졌다. 한편, 옥시 전 CEO 는 한 때 장애아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한 부로 상찬되었다. 다른 한편, 세퓨 대표의 딸은 아버지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원료물질을 적당히 배합해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싸고 이런 부조리가 연출될 수 있었던 까닭을 나는 (1)당사자 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설계/운영된 사법시스템 아래에서 일개인이 거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상황, (2)사고를 예방하고 또 능동적으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인 혹은 강제하는 시스템의 부재상황, 그리고 (3)피규제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만 준수하면 의무를 다 한 것이라 인식하게 만든 규제의 기본 틀 때문이라고 본다. 해서 나는 이 문제를 계기로 ‘사법구제시스템’과 ‘기업의 내부경영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규제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적용 가능한 구제법제가 정비돼야 한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형식보다는 유사한 피해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일반법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기업 내부에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관련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아울러 ①위자료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②(피해구제기금에 편입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③(기업 처벌을 전제로) 범죄수익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위험한 결과를 예상하였음에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해를 일으킨 기업은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과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가진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정부가 테스트의 적절성 내지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이 틀 안에서 제조자는 자신의 법적책임이 관련 행정법 규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피해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됨을 자각할 것이다.

주제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심사, 사법구제시스템, 기업의 위험관리시스템

### 서론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피해자는 총 530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46명이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치한 민간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수는 2016. 5. 현재까지 총 1,838명으로 사망자만 266명에 이른다. 한국사회에서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인해 대규모로 사람이 죽거나 질병에 이환된 사건으로는 가습기 살균제가 유일하다. 피해자들이 제조사의 관련책임자를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지(2012. 8) 4년이 다 되가는 시점인 2016. 4. 에야 비로소 검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제조사가 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서도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또 대학 부설 연구소에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등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면서 회사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고자 불리한 실험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등 결론 조작에 적극 참여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최근 이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출시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책임연구원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구속하였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그토록 유해한 화학물질이 정부의 유해성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공업용 세척제로 쓰이던 화학물질이 흡입독성실험 한번을 거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일까. 왜 옥시는 유해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필요한 흡입독성실험을 하지 않은 그런 무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해서 치명적인 원료물질을 적당히 배합해 만든 조악한 제품이 시장에 버젓이 출시될 수 있었던 것일까. 한편 가해기업들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왜 턱없는 금액으로 기업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화해를 했던 것일까.

나는 가슴기 살균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같은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시스템, 즉 ‘사법구제시스템’과 ‘기업경영시스템’ 그리고 ‘규제시스템’의 기능부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 2의 가슴기 살균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의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보고 여기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문제제기 및 분석

#### 한편의 부조리극

- #1.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유족 중 상당수는 가해기업과 ‘화해’를 하였다. 사망하거나 중증의 피해자의 경우 화해금액은 교통사고사망시 위자료를 참고해 2-3 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 그리고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조건으로 붙여졌다.
- #2. 옥시 전 CEO 는 한 때 장애아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한 부로 상찬되었다. 네티즌들은 CEO 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하였다.
- #3. 세퓨 대표의 딸은 아버지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원료물질을 적당히 배합해 만든 가슴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의 상당기간 동안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피해자와 아내와 자식을 잃은 유족은 가해기업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한 채 교통사고사망시 위자료 기준이 적용된 화해(안)을, 그것도 내용을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장애를 가진 자식의 양육에 헌신적인 옥시 전 CEO 는 해외 독성학계 저명학자의 권고 등을 통해 PHMG 의 흡입독성실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제품 개발 및 판매를 강행하였다. 세퓨 가슴기 살균제의 제조회사의 대표는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의 위험성에 완전히 무지했고, 그 결과 11 개월 된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 분석

이러한 부조리는 누구 또는 무엇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고 또 유지되었는가. 당사자 간의 대등함을 전제로 설계된 민사재판에서도 기업의 강자성은 여지없이 관철된다.

증거개시제도(discovery)도 없는 현행 사법구제시스템 아래에서 관련 정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제품으로 인한 피해였음(인과관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지워져있다.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인제도를 이용하려 하지만 적절한 감정인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감정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도 부족해 피해자에게는 그야말로 ‘법전 속’에만 존재하는 제도일 뿐이다. 반면에 가해기업은 인과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을 단순 부정하는 데서 나아가 관련 전문가를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법정에 반박증거로 제출한다. 국내 굴지의 로펌을 통해 법정에서 유지, 강화되는 기업의 책임회피성 변론으로 말미암아 가중되는 ‘정신적 고통’에, 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권위 있는 대학연구소 명의의 각종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을 보며 마땅히 이겨야 한다고 여기는 재판에서 질수도 있으리라 드는 ‘불안과 절망’에 피해자들은 그만 지쳐, 자신이 받은 고통에 견뎌 턱없는 금액으로 화해를 받아들이며 소송을 포기한다. 화해하지 않고 끝까지 가 요행히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기업은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재빨리 미미한 판결금액을 송금하고 이제 책임으로부터 해방된다. 한국 사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유독 잦다는 사실은 현행 사법구제시스템이 기능부전 상태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한편, 장애아들은 헌신적으로 키워 낸 옥시 전 CEO는 남의 자식의 생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왜 그는 달리 행동했을까. 자식과 회사라는 각각의 관계에서 부로서 또 CEO로서 그에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행위규범이 달라던 것이다. 장애아들을 둔 부로서 그는 자식을 한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 목표였고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은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부차적인 것이다. 반면에 한 회사의 CEO로서 그는 이윤극대화를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최고 목표였고, 따라서 ‘비용’ 지출을 없애거나 최대한 줄이는 것은 관심사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윤 추구를 생존원리로 하는 기업으로부터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경영을 기대하려면, 경영자가 부모의 마음으로 기업 경영하기를 요구하는 것보다, 필요한 비용은 지출하도록 만드는 내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본다[1].

한편, 세퓨의 대표가 자기가 직접 만든 제품의 유해성에 그토록 완벽하게 무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원료물질(PGH, PHMG)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해성심사판정과 일단 이런 판정이 있고 나면 물질의 용도를 얼마든지 달리 사용하는 것이 자유로운 화학물질 관리방식(달리 말해 용도변경에 따른 유해성재심사 제도를 두지 않았던 화학물질관리법의 문제)[2], 그리고 고시된 안전관리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법적의무도 또 정부가 이를 강제할 권한도 없는 공산품안전법 등[3] 때문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싸고 이런 부조리가 연출될 수 있었던 까닭을 나는 1) 당사자 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설계·운영된 사법시스템 아래에서 피해자 일개인이 거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상황, 2) 사고를 예방하고 또 능동적으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인 혹은 강제하는 시스템의 부재상황, 그리고 3) 피규제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만 준수하면 의무를 다 한 것이라 인식하게 만든 규제 기본 틀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해서 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사법구제시스템’과 ‘기업의 내부경영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규제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본다. 변화의 중점적 목표는 기업 내부의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사법시스템 및 규제시스템의 변화는 자체 목적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기업 내부시스템의 변화를 유도 내지 강제하는 압박적인 외부환경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 토론

### 사법구제시스템에서의 변화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적절한 해결이 긴요하지만, 그렇다고 당사자 간의 대등성을 전제한 사법시스템의 설계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 나는 변화의 방향은 ‘관련 정보’와 ‘전문적 지식’, 그리고 ‘전문가 동원능력’에서 취약한 피해자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증거개시제도를 통해 기업이 가진 내부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4]. 인과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이제 기업이 자기 제품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처럼 경제적·정신적·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구제제도의 도입론이 제기되는 문제상황인 것이다.

19 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관련해 4건의 특별법이 발의되었는데 각 법안의 제안이유와 목적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법률안	제안이 유	목적	위원회	피해구제기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3.6.14.)	- 제조사 뿐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 질 관리 실패에 의한 대규모 참사 - 소송장 기화에 따른 피해자 들의 고통 가중	가습기살 균제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유 족)에게 구제급여 를 지급해 피해자의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 경감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인정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여부 심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1.정부의 출연금 2.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분담금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3.4.18.	- 환경부 의 조기의 유해성 조사 불실시 에 따라 사고	가습기살 균제 피해자(유 족)에게 구제급여 를 지급해 신속, 효과적인 구제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 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지원, 국가시책 수립,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1.정부의 출연금 2.가습기살균제제조 ·판매업자의 기부금

	<p>발생 및 피해 확대. - 소송장 기화에 따른 피해자 들의 고통 가중</p>			
<p>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2013.5.7.)</p>	<p>생활용 품의 안전관 리와 생활용 품 사용으 로 예상하 지 못한 피해 구제하 는 법적 근거 마련</p>	<p>1. 생활용품 의 안전관리 에 관해 규정해 소비자의 안전에 이바지 2. 생활용품 의 화학적 부작용으 로 인한 건강피해 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p>	<p>- 생활용품피해판정위원 회 - 생활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소속</p>	<p>생활용품질병 피해구제기금 1.정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생활용품피해구제 부담금</p>

<p>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3. 6.10.)</p>	<p>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규정 부재</p>	<p>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신체적·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p>	<p>-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피해판정위원회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p>	<p>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피해구제기금 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피해구제부담금 2. 정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p>
---	--	---	---	--

이 특별법안에 대해 전경련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며, 필요하다면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유발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5]. 정부도 “피해자와 가해기업 간에 민사적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일반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피해와 관련 없는 기업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역시 입법에 반대하였다[6].

나 또한 가해기업이 뚜렷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와 무관한 기업들에게 구제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인자책임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7]. 그러나 정부의 구제 반대 논리에는 찬동할 수 없는데,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의 경우 제 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태도이기 때문이다[8].

국민 세금(정부출연금)으로 우선 급박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이후 구상소송을 통해 가해기업으로부터 구제에 소요된 돈을 받아내야 한다. 구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도 가진다. 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인정절차과정을 통해 인과관계가 공적으로 확인되고, 이후 구상소송을 통해 가해기업의 책임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가 나서 실시하는 구제과정에서 가해기업이 문제 수습에 나설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소송환경이 조성된다.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피해에, 그리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법'은 시설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적용 가능한 구제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다만 구제법의 형식과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형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피해에도 적용 가능한 일반법 형태가 바람직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기업의 내부 경영시스템에서의 변화

영국에서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처벌가능성이 확보돼야 기업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 들 것이라는 것이 제정이유였다[9]. 나도 기업 내부에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은 '비용'으로 인식되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축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기꺼이 이런 필요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제도적 환경으로 1)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대안 2)기업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기업살인법 제정을 검토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대안

일찍부터 소비자단체 등에 의해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이 제기되어왔으나 찬반논란으로 입법화되지는 못했다[10].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다시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식품과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는 아직까지 신중론 내지 부정론이 다수다[11]. 나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논란을 피하고자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으로 ①위자료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12], ②(피해구제기금에 편입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③(기업 처벌을 전제로) 범죄수익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안이 현실적으로 보다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하여튼 이 대안들이 내부 위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기업을 유도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기업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거둔 매출이익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기업처벌법의 도입

기업 자체도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 검찰은 옥시 전 대표와 책임연구원을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하였다. 고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법원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나아가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도 처벌하고 있다. 기업의 CEO를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사망결과를 용인하는 태도를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더 많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CEO라는 사람이 아니라 옥시라는 기업 자체에 주의를 집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옥시에 쏟아지고 있는 사회적 비난의 핵심은 “비용절감을 위해 공업용 세척제를 원료로 쓰면서 꼭 필요한 흡입독성실험을 하지 않은” 의사결정의 ‘의도적 무모성’에 있다. 의도적 무모성이라 함은 위험한 결과를 예상하였음에도 거기서 일단 멈춰 위험을 살펴보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람으로 치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어떤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과 달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한국의 형법이론체계 내에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없지 않으나[13], 이론이야 입법에 따라 달리 구성하면 되고, 무엇보다 그러한 무모한 의사결정의 역지라는 효과 면에서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업은 통상 문제 상황에서 경영자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든다. 그러나 기업의 처벌가능성이 확보된다면 기업은 내부에 위험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 들 것이다.

### 정부의 규제시스템에서의 변화

#### *개별 규제의 합리화*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생활화학용품에 연간 1톤 이상 그리고 0.1%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8). 하지만 대부분 생활화학용품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보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제품안전기준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생활용품에 화학물질이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는지, 독성이 어떠한지를 정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품안전기준의 설정을 통한 관리방식은 정부의 관련 정보의 결여로 실제 작동이 어려울 수 있다[14]. 화학물질과 제품의 감독권한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분장되어 있는 행정현실에서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용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는 것은 우려된다.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의 관리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품목별 안전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마찬가지로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하는 제품 등 위해성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사전허가대상으로 관리해야 한다[15]. 한편,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소위 ‘살생물제’는 선진국처럼 별도의 법으로 관리해야한다[16].

### 규제의 기본 틀의 변화

개별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개별 규제의 합리화만의 한계를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17]. 물질의 용도 변경에 따른 유해성재심사제도가 없었더라도 옥시는 마땅히 흡입독성실험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옥시기 이를 하지 않아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은 아니다. 관리가 규제일변도로 가면 피규제자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피규제자는 규제 이외의 것은 허용되는, 다시 말해 위법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한편 현실에서 규제를 잘 정비한다 하더라도 흠결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규제 집행력의 한계 및 실제 규제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격차까지 아울러 감안하면 개별 규제의 합리적 개선, 강화만으로 충분한 안전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규제의 기본 틀은 해당 제품과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가진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정부가 테스트의 적절성 내지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를 보완하는 체제여야 한다[18]. 이 틀 안에서 제조자는 자신의 법적책임은 단순히 관련 행정법 규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피해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19]. 이런 점에서 규제의 정비와 기업의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 결론

나는 이 글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부조리들을 상기하며 그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불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적용 가능한 구제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형식보다는 유사한 피해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일반법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기업 내부에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관련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아울러 ①위자료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②(피해구제기금에 편입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③(기업 처벌을 전제로) 범죄수익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위험한 결과를 예상하였음에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해를 일으킨 기업은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과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가진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정부가 테스트의 적절성 내지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이 틀 안에서 제조자는 자신의 법적책임이 관련 행정법 규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피해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됨을 자각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Kim YG,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Ethics of Corporate, Yonsei Business Review 2000; 37(12): 205
2. Park TH, Humid Disinfectant Case and State Liability,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2016; 16: 46-52
3.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2Gahap4515 Decided January 29, 2015: 7-8
4. Byun, JS, US Civil Litigation and Discovery: It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2013; 23: 154-157
5.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FKI), The Comments on the Draft Act concerning Relief of Damages caused by Chemical Substances including Humid Disinfectant, 2013. 6.
6. JTBC 2016. 5. 15. News, The MOE's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s by congress member Woo wonsic

##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7. Park JW, Legislative Study on Remediating and Relieving Damages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Focused on the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under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2015; 15(4): 1351-1352
8. Park TH, Humid Disinfectant Case and State Liability,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2016; 16: 48-51
9. Kim, JY, A review and Implication of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14; 25(4): 193-195
10. Chun SH, A Legal Study on the Punitive Damages, KERI Research Report 2007; 6: 56-60
11. Kim, TS, A Study on Punitive Damages: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into Korean Law, Civil Law Review 2010; 50: 249-268
12. Ko, SI, Discussions of Punitive Damages in the Civil Law Countries-A Perspective of Civil Law-,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4; 688: 182
13. Kim, JY, A review and Implication of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14; 25(4): 209
14. Lee, JH, What are to be done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nstances similar to such as Humid Disinfectant Case? The 2<sup>nd</sup> Forum on Humid Disinfectant Case 2016: 64
15. Lee, JH, What are to be done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nstances similar to such as Humid Disinfectant Case? The 2<sup>nd</sup> Forum on Humid Disinfectant Case 2016: 66-67
16. Park, JK, Enactment of New Biocides Regulation In Korea, KEI Policy Report 2014; 1: 129-130
17. LEE, WW, Deregulation and Regulatory reform: An Legal-policy Exploration for righteous regulative policies, Justice 2015; 106: 375-376
18. LEE, WW, Deregulation and Regulatory reform: An Legal-policy Exploration for righteous regulative policies, Justice 2015; 106: 380, 383-384
19. Lee, JH, What are to be done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nstances similar to such as Humid Disinfectant Case? The 2<sup>nd</sup> Forum on Humid Disinfectant Case 2016, 72-73.